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의 재기수사의 명령 관련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 ②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 ③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판준비절차, 법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5조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3.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위법한 합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 ④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4. 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②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자를 강제로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3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③ 불심검문시에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숨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5.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②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6.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과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이 없음에도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9. 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11.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된다.
 - ②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을 단순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해야 한다.
 - ④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를 고치는데 불과한 것은 공소장정정에 해당하고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3. 다음 중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은 법관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공판정에서 선고하여야 하므로 판결서 작성 전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감정처분허가장의 경우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다.
-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 ④ 재판서의 경정은 사소한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경우 판결서의 이유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고, 주문은 정정할 수 없다.

14. 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면제 판결의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은 유무죄의 실체판결의 대상이 된다.
-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다.

15.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사건이 수개의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공소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가 있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수표번호 348180호의 수표에 대하여 그 제시 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해서만 독립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이익은 없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하였는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소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7.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②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재심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③ 재심청구에 의한 심리절차는 판결절차가 아니라 결정절차이기에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④ 재심청구에 대한 청구기각결정과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중요 사실에 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 경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③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행위지인 해당 국가의 형사처벌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19. 甲은 X, Y가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서 A를 상해하였고, 이후 검사는 甲을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A, X, Y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각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X는 법정에서 그 목격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한편 Y는 목격한 내용을 자신의 친구 Z에게 말하였고 Z가 법정에서 “Y로부터 甲이 A를 상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다음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서도 사용될 수 없다.
- ㉡ X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적용된다.
- ㉢ X가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X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직접주의, 최량증거의 법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 Z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0.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甲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의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④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